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44

발의연월일: 2024. 12. 18.

발 의 자:윤준병·박희승·정동영

박민규 • 조계원 • 허종식

김성환 • 이병진 • 임미애

문금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및 2050탄소중립 달성 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농지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비하여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침해하지 않는 이용을 지향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목적을 벗어날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확산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 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고, 식량 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하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 은 자경 농지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라 하여도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제2조제9호, 제36조의3, 제59조제3호의2 신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농지의 복합이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서 부가적인 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6조의3(농지의 복합이용허가) ①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마을공동체(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지의 복합이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경 농지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 2.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을공동체가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② 제1항 각 호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시설 규모·종류 등은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농지전용허가,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제36조의3에 따른 농지의 복합이용 허가"로 한다.

제59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농지의 복합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지의 복합이용을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 <신 설></u>	9. "농지의 복합이용"이란 농지
	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
	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에 이
	용하면서 해당 농지에서 부가
	적인 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u>말한다.</u>
<u> <신 설></u>	제36조의3(농지의 복합이용허가)
	①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마을
	공동체(제34조제1항에 따른 농
	지의 전용허가 또는 제36조제1
	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
	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태양
	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지의 복합이용을 하려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 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 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 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 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아 니한 자경 농지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2.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을공동 체가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

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농지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② 제1항 각 호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시설 규모·종류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

도로 정한다.

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전용허가, 제3 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또는 제36조의3에 따 른 농지의 복합이용허가-----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 7. (생략)
- ② (생략)
-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3. (생 략) <u><신 설></u>

1. ~ 7.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제59조(벌칙)
<u>.</u>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농
지의 복합이용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를 설치하여 농지의 복합이용
을 한 자